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67
----------	-------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이진분 의원 등 14명

1. 제정이유

-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에 따른 시민의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목적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1조,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시행계획수립 및 지원 대상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사업을 정함(안 제7조)
- 센터설치 및 운영과 종사자의 비밀누설 금지 등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시행규칙을 정함(안 제10조, 제11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1

4. 관계법령발췌서 등 : 붙임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3

6.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7. 기타참고사항 : 부서 검토의견

【붙임 1】

안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

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시민

2.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

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

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의 관할 각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79)

안산시 장애인거점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68
----------	-------

발의년월일 : 2019. 5. .
발 의 자 : 정종길 의원 등 12명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었던 지원수준을 개정하고, 장애가정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조문전체 신생아를 출생아로 자구 수정함
- 지원대상자의 안산시 거주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장애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에 대한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개정조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3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4(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기타 참고사항 : 붙임5

- 현행조례(전문)
-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결과

[붙임 1]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1호 중 “신생아” 를 각각 “출생아”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1년” 을 “6개월” 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정종길 의원 대표발의 (행정3571)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u>신생아</u>의 건강관리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출생아</u>-----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장애인가정”이란 <u>신생아</u>의 부모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p> <p>2.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u>출생아</u>----- ----- ----- ----- ----- -----</p> <p>2.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자)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u>신생아</u>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u>신생아</u>의 부모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u>1년</u>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p> <p>② 지원금은 <u>신생아</u>의 부모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u>신생아</u>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u>신생아</u>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지원대상자) ① ----- <u>출생아</u>-----<u>출생아</u>----- ----- -----<u>6개월</u>----- -----</p> <p>②-----<u>출생아</u>----- -----<u>출생아</u>----- ----- -----</p>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1. 장애등급 1급 ~ 3급 : 100만원 이내
2. 장애등급 4급 ~ 6급 : 70만원 이내
3.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 ~ 7급 : 70만원이내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신청기간) 지원금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생략)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생략)

제4조(지원액) 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② ----- 출생아 -----

제5조(신청기간) ----- 출생아 -----

제6조(지원절차) (현행과 같음)

1. 출생아-----
2. (현행과 같음)